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

##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차 해 영 의원)

의안 번호	22-145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2. 11.

발의자: 차해영, 고병준, 권인순, 권영숙,  
김승수, 남해석, 이상원, 이한동,  
장정희, 한선미

### 1. 개정이유

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(안 제7조 제3항)

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

#### 나. 자문위원회의 구성(안 제9조)

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

### 3. 관계법령
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2. 11. 18. ~11. 23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자문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9조(자문위원회) ① <u>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u></p>
<p><u>제9조·제10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·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노인요양보험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0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“노인성질환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11.>